

01899954671 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04B	
과세 기간	2005 년 12 월 31 일	
통지 일자	2009 년 3 월 2 일	
고용주 ID 번호	XX-XXX9999	
연락처	전화번호 1-800-829-0922	
귀하의 발신자 ID	1234	
페이기 4 / 4		

강제징수 통지서

귀하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 예정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: \$3,999.86

이전에 통지한 바와 같이,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2005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을 미납하였습니다 (Form 1120). 귀하가 즉시 전화를 하지 않거나 2009 년 3 월 12 일까지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압류("강제징수")하여 미납 세금 \$3,999.86 에 충당할 것입니다.

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	\$3,999.86
이자 부과액	812.92
미납 과태료	284.26
미납 세액	\$2902.68
청구내용 요약	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

즉시 납부

• 세금 \$3,999.86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2009년 3월 12일 이후에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압류(강제징수)할 것입니다.

뒷 면에 계속...



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04B	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	
고용주 ID 번호	XX-XXX9999	

납부

-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.
- 지급 수단과 서신에는 고용주 ID 번호 (XXX-XX-XXXX), 과세 연도 (2005년 12월 31일) 및 양식 번호(1120)를 기입하십시오.

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

\$3,999.86

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, TX 73301-0030 01899954671

연락처 정보

통지번호	CP504B
과세 기간	2005 년 12 월 31 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
고용주 ID 번호	XX-XXX9999
페이지 2 / 4	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– 계속

즉시 납부 -계속

- 현재 미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, 지금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분할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. www.irs.gov를 방문하여 키워드 "tax payment options"를 검색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:
 - 분할납부 및 납부 동의 -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귀하가 자격이 있는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
 -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
 - 급여에서 공제
 - 신용카드 납부

또는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선택을 상의하십시오.

귀하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

귀하가 이미 미납 잔액을 완납하였거나 납부액이 귀하의 계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1-800-829-0922번으로 전화하시고 귀하의 납부정보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검토하도록 하십시오. 저희에게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. '연락처 정보'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잘라내어 이 잘라낸 부분을 서신이나 납입증빙자료를 포함하는 문서와 함께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.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-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국세청은 2009년 3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을 세액을 압류("강제징수")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과거에 특정 고용세 분쟁에 관한 청문회를 청원심사실(Appeals)에 요청하였을 경우에는, 고용세 징수를 위해 압류("강제징수")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 이는 내국세법 제 6331항 (d)호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통지서입니다.
- 압류를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미납금이 있을 경우, 귀하에게 IRS (Office of Appeals) 청원 심사실에서 청문할 권리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(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). 그런 다음 국세청은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한 압류("강제징수")를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 - 임금, 부동산 수수료, 기타 소득
 - 은행계좌
 - 사업 자산
 - 개인 자산 (차량 및 주택 포함)
 - 사회복지 보장 수급액
-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, 국세청은 언제든지 귀하의 재산에 연방세 유치권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(국세청이 이미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).

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 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04B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고용주 ID 번호	XX-XXX9999



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.irs.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
□귀하가 통신문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. 통신문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(XX-XXXXXXXX), 과세 기간 (2005 년 12 월 31 일) 및 양식 번호 (1120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□ 오전

| 목정

기본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추가 전화번호

통화 가능 시간

	<u>고</u> 용주 ID 번호	999-99-9999
	페이지 3/4	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- 계속 과태료 미납	 선유치권이 설정되면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세금 유치권은 귀하의 신용 보고/귀하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-IRS가 귀하 재산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의 채권자들에게도 공개적. 귀하가 세무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귀하의 압류("강제징수")권을 갖습니다.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항목 미납 과태료 	서에도 표시되므로— 에 대한 우선 압류권을 으로 통지됩니다. 재산에 대한
	납기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.5%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%입니다. 미납 세금이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는 매월 과태료가 1.0%로 인차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. (내국세법 제66] 있을 경우 본 통지서 인상됩니다. 1개월이 다 651항)
과태료의 면제 또는 축소	과태료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 국세청은—경제적 어려움, 가족의 사망, 자연재해로 인한 등의— 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;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 국세청이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삭감해 주도 바라시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: • 재고할 과태료 부과액의 종류를 명시하십시오 (예: 20 과태료). •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여 귀하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송하십시오. 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, 귀하의 설명 내용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	: 재무 기록의 손실 가 어려울 수 있다는 드록 고려해 주기를 05 년도 지연 신고 하십시오.
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	변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우를 알려드립니다. IRS 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: ●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 에 서면 조언을 요청호 ●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IRS 에 제공하였음 ● 귀하가 IRS 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 ●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기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및 경감 요구서' (Form 843)를 작성하여 귀하가 세금 보고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. 이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센터를 찾으려면 www.irs.gov를 이용하거나 1-800-829-전화하십시오.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세역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자	했는지 여부 가 부과되었음 는 요구하려면 '환급 청구 고서를 제출한 IRS 니 해당 IRS 서비스 - 0922 번으로 내 완납일까지
	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. (내국세법 제항목	
	총 이자 아래 표는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된	\$812.92 이율을 나타내고

문의하십시오.

통지 번호

과세 기간

통지 일자

있습니다.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 번으로

CP504B

2005년 12월 31일

2009년 2월 16일

통지 번호	CP504B
-3 .9 3-3) 0) 1)
과세 기간	2005 년 12 월 31 일
통지 일자	2009년 2월 16일
よく ほく	2009 년 2 월 10 월
고용주 ID 번호	999-99-9999
프랑구 ID 현호	999-99-9999
페이지 4/4	
41 4 / 4	

이자 부과액 계속		
	기간	이자율
	2005.10.1 ~ 2006.6.30	7%
	2006.7.1 ~ 2007.12.31	8%
	2008.1.1 ~ 2008.3.31	7%
	2008.4.1 ~ 2008.6.30	6%
	2008. 7. 1 ~ 2008. 9.30	5%
	2008. 10. 1 ~ 2008. 12.31	6%
	- 2009. 1. 1일 이후	5%

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www.irs.gov/cp504b.
- 세무 양식, 지침 및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.irs.gov를 방문하거나 1-800-TAX-FORM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동봉한 IRS 징세 절차 (간행물 594)를 검토하십시오.
- 일반적으로 저희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상대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납세자 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종업원, 고용주, 은행 또는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계좌와 관련하여 저희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